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7년 7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新수익기준(K-IFRS 제 1115 호) 주요내용
- 新수익기준 (K-IFRS 제 1115 호) 도입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

세무정보

- [청탁금지법]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허용가능한 금품수수 (국민권익위원회)
-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기획재정부)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주요내용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수익인식
모형 제시

1.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 제시



계약의 식별

가. 계약의 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만 적용
 - 다른 기준서^(주*)가 적용되는 리스.보험.금융상품 등의 계약과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계약^(주 **)은 제외(문단 5)
 - * 제1017호(리스), 제1104호(보험계약),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1호(공동약정),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 예: 두 정유사가 서로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유류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계약
 -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문단 10)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고객과의 계약’임
 -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 구두,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 ② 이전할 재화.용역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 가능
 - ③ 이전할 재화.용역의 대금지급조건을 식별 가능
 -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주 *)이 있음
 - ⑤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음
 - *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업적 실질’, 즉 ‘경제적 결과’가 있으며(문단 9(4), BC41), 이 기준이 없으면 재화.용역을 서로 주고받는 이전을 통해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릴 수 있음(문단 BC40)
- (계약 결합)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문단 17)

**수행의무의
식별**
나. 수행의무의 식별

□ 수행의무는 수익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이며,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여러 수행의무^(주*)를 식별하여 분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예: (통신회사) 단말기와 24개월 약정 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

(자동차회사)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일정 기간 무료 유지 용역 약속

○ 현행 기준서에는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구성요소(수행의무)를 식별하여 분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각각의 약속(문단 22)

(2) 구별되는(distinct)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2) 일련의 구별되는(distinct) 재화나 용역^(주*)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은 실질이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음

*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a series of distinct goods or services): 하나의 계약에서 다수의 동일한 구별되는 재화·용역이 식별되고, 그 재화나 용역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며,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같다면 다수의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나의 계약에 너무 많은 동일한 수행의무의 식별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정)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distinct) 것임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재화·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음(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음)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음(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됨)

□ (보증) 기업이 약속한 보증이 고객에게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더하여 하나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수행의무에 해당(문단 B28~B33)

※ 기업이 약속한 보증은 확신 유형과 용역 유형으로 구분

① 확신 유형(assurance-type): 관련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으므로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줌

② 용역 유형(service-type):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

○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에 해당

○ 현행 회계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증의무의 예상원가를 총당부채로 인식하며, 수익인식 대상으로 분리하지 않음

□ (구매선택권)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은 다양한 형태^(주*)로 나타남(문단 B39~B43)

* 예: 판매 인센티브, 고객보상점수(points), 계약갱신 선택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그 밖의 할인

○ 계약에서 부여한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주*)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으로 인하여 계약상 수행의무가 생김

* 예: 해당 지역이나 시장에 있는, 그 재화나 용역의 고객층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

- 그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용역의 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주*)한 것이기 때문

* 따라서 기업은 그 미래 재화.용역을 이전하거나 선택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에 수익을 인식

거래가격산정
다. 거래가격의 산정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으로 거래가격을 산정(문단 47~57)

◦ 그 대가가 변동^{(주*)*(변동대가)}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추정하되, 수익의 과대계상을 막기 위해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제약

* (변동대가)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 때문에 변할 수 있음

- 변동대가는 ①기댓값과 ②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

-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누적수익인식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

◦ 현행 기준서에는 변동대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수익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 각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변동대가의 추정치가 제약되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포함)(문단 59)

□ (유의적인 금융요소) 재화나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의 지급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어(1년 초과) 유의적인 금융 효과를 얻게 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산정(문단 60~65)

◦ 현행 기준서에서는 후불 조건인 경우에만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며, 선수 조건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음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라.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하나의 계약에 여러 수행의무가 있으면, 각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문단 73~90)

◦ 현행 기준서에는 배분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경영진이 판단하여 배분방법을 선택

◦ (개별 판매가격) 약속한 재화.용역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으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해야 함

- 아래 방법으로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되, 이 중 잔여접근법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

(1)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시장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2)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

(3) 잔여접근법: 총 거래가격에서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잔여 접근법 사용(문단 79)

- ① 같은 재화.용역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금액으로 판매
- ② 재화.용역의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그 재화.용역만을 따로 판매한 적이 없음

마.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

기업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문단 31)

◦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며,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때에 이전됨

고객의 통제 ➡ 자산의 이전 ➡ 수행의무 이행 ➡ 수익 인식

◦ (통제) 자산^(주*)(재화.용역)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재화.용역은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순간적일지라도 자산임

-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거나 자산의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됨

다음 지표를 참고하여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① 기업의 대금지급청구권(고객의 대금지급의무)
- ② 자산의 법적 소유권(legal title) 이전
- ③ 자산의 물리적 점유(physical possession) 이전
-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significant risks and rewards of ownership)의 이전
- ⑤ 고객의 자산 인수^(주*)(acceptance)

* 재화.용역이 합의한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동의.승인하여 받아들인다는 적극적인 의미

수행의무는 어느 한 시점에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문단 35~38)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산출법.투입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에 관한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고객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예: 청소 용역, 케이블TV 용역)

②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
(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그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음(예: 주문 제작 자산)

◦ 나머지는 어느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이며, 고객이 자산(재화.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 인식

□ (재매입약정)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문단 34, B64~B76)

- 재매입약정은 일반적으로 콜옵션, 선도계약, 풋옵션의 형태
- 기업이 판매한 자산에 대한 콜옵션^(주*). 선도계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수익 인식 불가

- * (콜옵션)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권리
- (선도)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

☞ 콜옵션. 선도계약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 판매가격과 재매입가격의 관계 | 회계처리 |
|-----------------|------|
|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 리스계약 |
|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 금융약정 |

◦ 풋옵션^(주*)의 경우 고객이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 행사가격과 판매가격, 예상 시장가치를 비교하여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해야 함

- * (풋옵션) 고객이 요청하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

☞ 풋옵션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 옵션 조건 | 판단 기준 | | 회계처리 |
|--------------|--|-----------|-----------------|
|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 고객이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 | 유의적임(주 1) | 리스계약 |
| | | 유의적이지 않음 | 반품권이 있는 판매(주 2) |
|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주 1) | | 금융약정 |
| |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 & 고객이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음 | | 반품권이 있는 판매(주 2) |

주1) 재매입 가격이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보다 유의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임을 나타냄

주2) 반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에 대해 예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변동대가의 추정치 제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

II. 적용지침 사례의 구체화

적용지침 사례의 구체화

□ (지적재산 라이선스) 현행 규정에는 없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수익거래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문단 B52~B63B)

-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하며, 소프트웨어, 기술, 영화, 음악, 프랜차이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음
- 그 권리를 사용권과 접근권으로 구분하고, 사용권은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접근권은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사용권(a right to use) :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 접근권(a right to access):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 (계약원가의 자산화) 계약과 관련된 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여 현행 실무를 개선(문단 91~98)

◦ (계약체결 증분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예: 판매수수료)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하되,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가능

-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원가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계약이행원가)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다른 기준서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이행원가를 자산으로 인식

①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계약에 직접 관련

② 원가가 미래 수행의무 이행 시 사용할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임

③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

□ (계약자산 구분 표시) 계약상 권리와 관련된 위험^(주*)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계약자산 중 수취채권을 별도 표시(문단 105~109)

* 비록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모두 신용위험에 노출되겠지만, 계약자산은 업무수행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도 노출되기 때문

◦ (계약자산)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로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 (수취채권)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받을 권리는 무조건적임

◦ (계약부채)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

-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에(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

- 고객에게서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미래에 재화·용역을 이전할 수행의무에 대한 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

- 그 재화·용역을 이전하고 따라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

☞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인식 사례 (IE201-IE204)

□ (계약 체결)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와 B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

- 계약에서는 제품 A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 A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
- 대가 1,000원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A와 B 모두를 이전한 다음에만 받을 권리가 생김
 - ➔ 기업은 제품 A와 B 모두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가 없음

□ (수행의무) 기업은 제품 A와 B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

□ (거래가격의 배분)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제품 A에 대한 수행의무에 400원을, 제품 B에 대한 수행의무에 600원을 배분

□ (회계처리) 기업은 제품 A를 이전하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차) 계약자산 400원 (대) 수익 400원

- 기업은 제품 B를 이전하는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인식

(차) 수취채권 1,000원 (대) 계약자산 400원
 수익 600원

☞ 계약부채 인식 사례 (IE205-IE208)

- (계약 체결) 기업은 제품을 개당 150원에 이전하기로 20X9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
- 고객이 1년 이내에 제품을 1백만 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125원으로 낮추어야 함

□ (수취채권)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에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 가격 감액을 소급 적용(제품 1백만 개를 운송한 후)하기 전까지, 개당 150원의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수취채권)가 있음

□ (거래가격의 산정)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 고객이 임계치인 제품 1백만 개 조건을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제품 개당 125원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 (회계처리) 기업은 제품 100 개를 고객에게 처음 운송할 때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차) 수취채권 15,000원(1) (대) 수익 12,500원(2)
 환불부채(계약부채) 2,500원

주: (1) 개당 150원 × 제품 100
 (2) 개당 거래가격 125원 × 제품 100

- 환불부채는 제품 개당 25원의 환불금을 나타내며, 이는 수량기준 리베이트(기업이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계약 표시가격 150원과 추정 거래가격 125원의 차이)로 고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임

III. 수익 관련 질적·양적 공시 강화

[한울 Newsletter 6월호 참조]

新수익기준 (K-IFRS 제 1115 호) 도입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
**新수익기준
(K-IFRS
제1115호)
도입관련 주식
공시 모범사례**
**중요한
회계정책
사례**
1. 중요한 회계정책

201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 상황 1 재무영향분석 미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년 XX월 XX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X년 X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회계, 전산 부서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X년 X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X년 XX월 XX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201X년 X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결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 K-IFRS 제1115호에 따른 금액(B) | 증감(B-A) |
|----------|-------------------|-------------------------|---------|
| ... | x x x | x x x | x x x |
| 유동자산 합계 | x x x | x x x | x x x |
| ... | x x x | x x x | x x x |
| 비유동자산합계 | x x x | x x x | x x x |
| 자산총계 | x x x | x x x | x x x |
| ... | x x x | x x x | x x x |
| 유동부채 합계 | x x x | x x x | x x x |
| ... | x x x | x x x | x x x |
| 비유동부채 합계 | x x x | x x x | x x x |
| 부채총계 | x x x | x x x | x x x |
| 자본금 | x x x | x x x | x x x |
| ... | x x x | x x x | x x x |
| 자본총계 | x x x | x x x | x x x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 K-IFRS 제1115호에 따른 금액(B) | 증감(B-A) |
|------|-------------------|-------------------------|---------|
| 매출액 | x x x | x x x | x x x |

| | | | |
|-------|-----|-----|-----|
|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연결)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더라도 연결회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1.1.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X 회계연도 중 IT서비스 부문 수익은 〇〇〇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약 〇〇%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IT 통합 계약에서 (1) 소프트웨어 판매, (2) 설치용역,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4)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행의무 분리에 따라 연결회사의 IT서비스 부문 수익이 〇〇〇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〇〇〇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문제작장비
1.1.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주문 제작 장비

연결회사의 기계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특수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2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201X 회계연도 중 인식한 관련 사업부문의 수익은 〇〇〇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〇〇%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주문 제작 장비의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내부 법무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주문 제작 장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이 〇〇〇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〇〇〇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행률 측정

1.1.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의 플랜트 사업부문은 특수장비의 구매, 설치를 포함한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합니다. 201X 회계연도 중 플랜트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〇〇〇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〇〇%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외부 업체에 특수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장비를 설치하며, 특수장비 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의 약 〇〇%를 차지합니다. 특수장비 공급과 건설용역의 제공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수행의무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플랜트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특수장비 원가가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특수장비 원가가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동대가
1.1.4 변동대가

연결회사의 의류사업 부문은 고객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X 회계연도 의류사업 부문의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변동대가 규정에 따라 연결회사의 의류사업 부문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래가격의 배분
1.1.5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함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라 수익이 〇〇〇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〇〇〇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6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회사는 종업원의 IT통합 공급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1X 회계연도 중 인식한 영업수수료는 총 〇〇〇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비용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연결회사의 〇〇이 증가(감소)하고, △△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라 〇〇이 〇〇〇백만원 증가(감소)하고, △△가 〇〇〇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증
1.1.7 보증

연결회사 가전사업 부문의 201X 회계연도 수익은 〇〇〇백만원으로 총 수익의 〇〇%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데, 고객에게는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입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할 예정이나, 보증의무 구별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보증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하여 그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을 인식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함에 따라 수익이 〇〇〇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〇〇〇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인/대리인
1.1.8 본인 대 대리인

연결회사의 마케팅 사업부는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라 제품 구매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거래를 할 때 '본인'에 해당하고, 연결회사 총 수익의 〇〇%에 해당하는 〇〇〇백만원을 201X 회계연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본인 대 대리인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나, 재무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종전에 총액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연결회사의 수익이 감소(증가)하고, △△이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총액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익이 〇〇〇백만원 감소(증가)하고, △△이 〇〇〇백만원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이선싱-사용권
1.1.9 라이선싱: 사용권

연결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영화 및 음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제공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습니다. 201X 회계연도에 인식한 영화 및 음반 라이선스 수익은 〇〇〇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매출액의 〇〇%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에도 현행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영화 및 음반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을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라이선싱-접근권
1.1.10 라이선싱: 접근권

연결회사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보유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고객에게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라이선싱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캐릭터를 계속하여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화영화를 TV,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방영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합니다. 201X 회계연도에 인식한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은 〇〇〇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〇〇%에 해당합니다.

캐릭터 라이선스 약속의 성격은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동안 연결회사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약속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라이선스 기간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만화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라이선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만화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가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청탁금지법]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허용가능한 금품수수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6호)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판례가 형성되기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여부 판단

(1) 개요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 8 조 제 3 항 제 6 호 :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2)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

□ 행사 목적 및 내용

○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참석 대상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 준비 절차
 -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2. 공식적 행사 관련 금품등 허용 범위

(1) 제공 주체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함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 3 자가 제공하는 경우**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 해외에서 ○○외국협회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함께 가는 기자에게 교통비,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

(2) 판단기준

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

- 의미 및 판단기준
-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수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외 개최 행사의 경우 통상 교통, 숙박 등의 가액이 높으므로 **해외 개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 범위에 해당

나. 일률적으로 제공

의미 및 판단기준

○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 가능**

- 행사에서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기자 등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사전에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기업 공식행사의 VIP 초청자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3 명만 초청하여 교통, 숙박, 음식 등을 제공(×)

3. 금품등의 종류

음식물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 8 조제 3 항제 6 호)

○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기준 3 만원 초과 가능

- <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음식물 >
- ◆ **각자 계산하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허용, 또한 음식물 가액기준인 **3 만원 초과 부분만 각자 계산도 허용**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됨(법 제 8 조제 3 항제 2 호)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8 호)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 회 100 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 8 조제 2 항)

□ 교통, 숙박 등의 편의

- 교통,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
-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제공 가능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해당 가액 상당의 금전 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움
-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 가능

- <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교통·숙박 >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등의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8 호)
 - ◆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교통, 숙박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 8 조제 3 항제 8 호)

- 당사자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제공 시점과 경위, 제공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 회 100 만원 이하의 교통·숙박 등의 편의는 수수가 허용됨(법 제 8 조제 2 항)

□ 선물

○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제 6 호)하고 있음

-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됨**

<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선물 >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은 수수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7 호)
-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7 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8 호)
- ※ ○○국제영화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영화제에 취재 및 리뷰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프레스티켓 제공 허용
-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 8 조제 3 항제 8 호)
- ※ 다만,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10 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 15 조)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 회 100 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 8 조제 2 항)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을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월 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 *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교환됩니다.
 - *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세법개정시 기도입
- 한국은 2016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다자간 협정 참여국 : 57개국(2017년 1월 기준))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 *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간 협정체결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추진

주요내용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렌탈료 환부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 제 48 조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 10 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 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

■ **적격인적분할로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이전한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정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적격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여 분할존속법인은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 2017. 3. 6.).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 | |
|-----|--|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
| 발행인 | 한울회계법인 |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